

◇ 자 료

書雲觀志의 翻譯과 解説. 2. 官廡

俞 景 老
서울대

1. 緒 論

이 題目의 글의 1은 「한국과학사학회지」 11권 1호(1990년 12월)에 실린 “共同研究 書雲觀志”속의 “卷之一 官職”으로서 발표되었다. 이제 그에 이어서 2로 “官廡”편을 쓴다. 翻譯과 註와 解説의 형식은 앞의 1을 그대로 따른다.

2. 翻 譯

官 廡

(1)

本觀象監은 하나는 景福宮 迎秋門 안에 있었고 하나는 北部 廣北坊에 있었으며 觀天臺가 있었는데 중간에 兵火를 만났다. 다시 昌慶宮의 金虎門 밖과 慶熙宮의 開陽門 밖에 세웠는데 모두 觀天臺(주, 俗名으로 瞻星臺라고 한다)가 있다.

- 肅宗 戊辰(14年, 1688)에 領觀象監事 南九萬이 친히 터를 살피서 官衙를 창설하였으니 이것이 곧 金虎門 밖의 本觀象監이다. 觀天¹⁾과 察直²⁾의 제도가 一時에 갖추어졌고 吏屬과 奴僕과 工匠도 역시 각각 맡은 일을 가졌다. 開陽門 밖의 觀象監은 壬午(41年, 1702)에 창건했으며 監官(觀象監員) 李國華, 宋暹 등이 役事を 감독했다. 臺, 觀의 설치의 규모는 金虎門 밖의 것과 대략 같았으나 廳事의 東西室은 비교적 작았다. 그때 金昌集이 本監의 提調였다. 歲月이 오래되자 퇴폐하였다. 今上(純祖)의 辛未(11年, 1811)에 비로소 집과 담을 얹어서 觀測할만한 곳으로 마련하였다. 戊寅(18年, 1818)에 또 門廳과 觀天臺를 세웠는데 이는 戶曹에서 수리하고 지붕을 있고 한 것이다. (주, 東西室을 합해서 廳事는 7間半이고 吏廳은 3間이며 大門의 좌우의 翼廊은 각각 1間이었고 또 日晷臺와 測雨臺가 있었다.)

(2)

廳事: 10間, 안에 東西室이 各居했고 2間은 곧 公事堂이다.

觀天臺: 廳事의 南쪽에 돌을 쌓아서 臺를 만들고 돌난간으로 둘렀으며 그 위에 平方石을 얹어 놓았다. 觀測할 때에는 小簡儀를 그 위에 안치하였다. 그래서 또 小簡儀臺라고도 했다. 英宗 庚寅(40年, 1770)에 明나라의 舊制에 의하여 相風杆³⁾을 돌난간 옆에 세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占察⁴⁾을 받게 했다.

1) 觀天: 하늘의 여러 현상을 관측하는 것
 2) 察直: 觀象監 안을 살피고 지키는 것.
 3) 相風杆: 風旗를 다는 장대, 風旗竿
 4) 占察: 그때의 바람을 살피고 그날의 바람을 점치는 것.

欽敬閣: 英宗 庚寅(40年, 1770)에 閣 3間을 세웠다. 戶曹正郎 金恒柱와 兼教授 姜熙彦이 역사를 감독하였다. 閣안의 서쪽에 國初의 石刻天文圖를 수장했고 그 東쪽에 肅宗朝의 石刻天文圖를 수장했다.

○御製 欽敬閣記에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欽敬하는 것은 곧 乾象⁵⁾이다. 오늘 象緯郎(觀象監官)이 奏하는 것을 듣고 舊闕(景福宮)에 觀象圖石板이 있음을 알고 곧 살펴보기를 명했더니 과연 衛將所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었다. 어찌 이렇게 듣는 것이 늦었는가. 송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度支에 영을 내려 本監으로 가져다 놓게 하고 石板을 수장하는 곳을 감히 舊闕의 欽敬閣의 이름을 끌어서 특서하여 걸어놓고 후세 사람에게 보게하노라」하였다.

○御製 原本은 本記에 실었다. 正宗 丙辰(20年, 1796)에 提調 徐浩修가 曆象考(國朝 曆象考)를 蒐輯하였을 때 刪定한 新本을 얻어서 經筵에서 載錄하기를 꿈하였다. 이제 그 曆象考를 따랐다.

日晷臺: 崇禎 9年 丙子(仁祖 14年, 1636)에 時憲 新曆에 의거하여 地平日晷를 만들었는데 李天經이 감독하여 만들고 湯若望과 羅雅谷이 설계한 것이다. 崇禎 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하여 昌德宮 弘文館의 南쪽 계단에 설치하였다. 英宗 庚寅(40年, 1770)에 王이 昌德宮에 이르러 展拜했을 때 弘文館에 들어서 친히 그 制度(構造와 機能)를 보고 다음날에 本監으로 옮기어 欽敬閣 옆에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南北을 맞추어 안치하였다. 또 廳事의 南쪽에도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日晷를 그 위에 안치하였다. 그림자를 測定하는 데는 三角銅表의 제도를 썼는데 이는 明史志에 실린 李天經法에 의거한 것인데 그 제조한 해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測雨臺: 廳事의 뜰의 東쪽에 있다. 英宗 庚寅(40年, 1770)에 度支에 명하여 世宗朝의 測雨器의 제도에 따라 銅을 부어서 몇 件을 만들었다. 길이(높이)는 1尺5寸이고 圓徑(直徑)은 7寸이다. 하나는 昌慶宮에 놓고 하나는 慶熙宮에 놓고 둘은 兩쪽 本監(觀象監)에 내리고 그 나머지는 八道와 兩部⁶⁾에 나누어 주었다. 비가 올 때마다 몇尺 몇寸이라고 보고하였다. 象緯考를 편찬하게 되자 이 명이 있었다. 臺를 만들고 測雨臺를 놓았는데 臺의 높이가 1尺이고 너비가 8寸이었다. 庚寅(16年, 1740)에 새로 만든 布帛尺을 썼다. 이에 앞서 判府事 俞拓基가 三陟府에 있는 世宗朝의 布帛尺을 가져 오고 經國大典의 度衡法을 참고하여 黃鍾尺 周尺 營造尺 禮器尺의 諸式을 정하기를 청하여 王이 이에 좇았다.

天文直廬: 7間半으로 廳事의 東쪽에 있다.

三曆廳: 6間으로 三曆官이 會衙⁷⁾하는 곳이다.

誥吉廳: 6間으로 곧 命課直廬이다. 正宗 甲寅(18年, 1794)에 三曆廳 東쪽에 창건하였다.

日課廳: 6間이다. 즉 進獻⁸⁾과 頒賜⁹⁾를 담당하여 관리하는 곳이다. 觀天臺의 東쪽에 있다.

官廳: 4間인데 곧 公貨¹⁰⁾를 出納하는 곳으로 觀天臺의 東쪽에 있다. 進獻과 頒賜로 印刷하는

5) 乾象: 하늘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6) 兩都: 江都 즉 江華島의 首邑과 松都 즉 開城을 말하는 것.

7) 會衙: 會同하여 議決하는 것.

8) 進獻: 임금에게 바치는 것.

9) 頒賜: 임금이 나누어 주는 것.

10) 公貨: 公的인 物貨.

啓目紙¹¹⁾와 日課紙¹²⁾는 三南¹³⁾ 兩西¹⁴⁾ 江原의 여러 道에 卜定¹⁵⁾하여 大同¹⁶⁾元貢¹⁷⁾속으로 들고 그 값은 宣惠廳에서 받는다. 戶曹의 各項의 印曆紙價와 官廳의 應用¹⁸⁾紙價는 마땅할만큼 헤아려서 마련(磨鍊)¹⁹⁾하고 參別²⁰⁾하여 倉庫에 남기고 그 나머지는 員役²¹⁾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策應²²⁾의 밑천으로 한다. 값을 받는 것 중에는 白紙의 名目은 없으나 이는 官廳으로부터 除出²³⁾된다. 啓目이나 日課 등의 종이는 전례에 따라 換作²⁴⁾하기 때문에 자연히 남는 돈(剩錢)²⁵⁾이 생긴다. 地理學의 經師²⁶⁾와 生徒의 收布錢²⁷⁾과 印曆所에서의 移來錢²⁸⁾을 아울러서 官廳의 1년 동안의 비용에 대비하여 종이의 부족되는 수량을 사들이는 데 충당한다. 종이와 돈은 서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收入과 支出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收入은 一定한데 支出은 一定히 하는 규칙이 없어서 문란이 날로 극심하여 不足額(欠縮)²⁹⁾이 해와 더불어 늘어갔다. 英宗 甲申(40年, 1764)에 鄭弘淳이 本監의 提調가 되어 그대로 답습되어 오던 잘못을 바로 잡고 번거로운 것을 깎아서 式例³⁰⁾를 만들었다.

印曆所:6間이며各司의 分兒³¹⁾와 本監의 私件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다. 英宗 丙戌(42年, 1766)에 領監事 洪鳳漢이 天文直廬의 南쪽에 창건했다.

印出所:5間半이다. 즉 印刷를 監督하는 곳이다. 撤板³²⁾하는 날에 印曆하는 곳으로부터 물러난다. 觀天臺 西쪽에 있다.

吏廳:6間, 日課廳의 옆이며 또 官廳의 東쪽인 곳에 있다. 庫直所 2間이 있다.

門廊:大門 1間에 翼廊³³⁾이 4間이다.

○三門 안에 별도로 돌계단을 설치하여 편안하게 다니는 곳으로 했다. 또 天文直廬의 東쪽에 小門을 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게 하고 大門으로는 드나들지 않게 했다.

○觀天臺와 欽敬閣은 營繕이 수리하는 일을 관장했다. 大典通編에 營繕 한곳이 瞻星臺를 관장한다 라고 하였다.

11) 啓目紙:啓本 즉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목록을 적는 종이.

12) 日課紙:관청에서 매일 쓰는 종이를 말하는 듯하다.

13) 三南:忠淸, 全羅, 慶尙의 3道.

14) 兩西:黃海, 平安의 兩道.

15) 卜定:貢物 이외에 국가에 필요한 土產物을 각 地方에 할당하여 납입케 하는 것.

16) 大同:원래 지방의 土產物로 바치는 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한 貢制.

17) 元貢:元定貢物의 약으로 원래 정한 액수의 貢物을 말하는 것.

18) 應用:쓰는 데 필요한 또는 씹씀이에 맞추는 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19) 磨鍊:우리말의 마련을 漢字로 쓴 것으로 생각된다. 마감을 磨勸으로 쓰는 例와 같은 것.

20) 參別:조목 조목으로 가려 나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1) 員役:吏胥와 같은 뜻이다.

22) 策應:業務를 수행하는 方策의 뜻이다.

23) 除出:나누어 보내는 것.

24) 換作:穀物로 바칠 것을 무명으로 바꾸어 내는 것. 다시 土產品을 쌀 또는 돈으로 바꾸어 내는 것.

25) 剩錢:換率관계에서 남게 되는 돈.

26) 經師:여기서는 地理學教授를 말한다.

27) 收布錢:策布, 保布, 身布로 받아들이는 돈.

28) 移來錢:移屬되어 오는 돈.

29) 欠縮:不足額 즉 支出超過 또는 收入不足을 뜻하는 것.

30) 式例:직책내려가는 一定한 事例

31) 分兒:分下와 같은 말로 年例에 따라 官衙의 벼슬아치에게 物品을 나누어 주는 일.

32) 撤板:印刷가 끝나서 木板을 걷우는 것.

33) 翼廊:大門의 옆에 붙은 行廊

3. 解 說

- (1)에서 本監 一在景福宮迎秋門內, 一在北部廣化坊으로 보아 朝鮮初부터 觀象監(舊名 書雲觀)이 景福宮 迎秋門 안과, 北部 廣化坊의 2곳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이는 世宗實錄의 世宗 13年(1431) 6月乙未와 庚申의 기록과 상응하는 것이고 또 沈括의 「夢溪筆談」象數二에 기록된 宋의 禁中の 天文院과 宮 밖의 司天臺가 서로 檢察했다는 前例와도 맞는 것이다.
- (1)의 改建於昌慶宮之金虎門外라는 기록의 昌慶宮은 昌德宮의 誤記로 판단된다. 金虎門은 昌德宮의 敦化門을 西쪽으로 돌아간 곳에 있는 門이다.
- (1)의 南九萬 躬審基地는 壬亂 중에 兵火를 만나 타버린 옛 北部 廣化坊의 觀象監 자리를 친히 살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하다. 金虎門 밖의 本監자리도 北部 廣化坊이고 다른 곳이라고 생각될 만한 文獻도 없기 때문이다.
- (1)의 慶熙宮 開陽門 밖의 觀象監은 현재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는 正祖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都城圖에 그려져 있어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人家가 들어서 분간하기 어렵다.
- (1)의 金虎門 밖의 本監은 현재 現代建設이 그 자리를 깎아내고 社屋을 지었고 다만 觀天臺만은 그 높이에 남겨서 보존하고 있다. 전에는 이 자리에 徽文高等普通學校가 있었다. 이 觀象監의 南쪽에 났던 길의 고개를 觀象監재(고개), 또는 雲峴(書雲觀峴의 뜻)이라고 했고 그 곳에 있던 興宣大院君의 私邸를 雲峴宮이라고 했다.
- (1)에서 觀天臺의 註로 속명이 瞻星臺라고 한다고 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문구이다. 新羅의 瞻星臺를 占星臺라고도 했는데 朝鮮에 와서는 觀天臺를 瞻星臺라고도 한 것은 瞻星의 성격은 바뀌어도 명칭은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 (2)의 欽敬閣의 이름은 舊關의 欽敬閣의 명칭을 끌어서 지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물은 완전히 바뀌었다. 玉漏를 설치했던 것이 石刻天文圖의 보관소가 된 것이다.
- (2)의 日晷臺는 李天經 督製 湯若望 羅雅谷 立法의 地平日晷의 臺인데 이 地平日晷가 崇禎末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傳해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李殷晟이 昭顯世子가 淸에 人質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 결론과는 맞지 않는다. 여기서 始傳이라고 한 것이 日晷의 實物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인지 그 製作과 使用法이 전하였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장래의 연구과제가 있다.
- (2)의 印曆所의 명칭과 관장업무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 있다. 이것도 장래의 연구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이다.

參考文獻

1. 李洪烈, “雜科試取에 對한 一考”, 1967, 「白山學報」第3號, 國峰 劉鳳榮先生 古稀紀念 史學論叢, 白山學會.
2. 李殷晟, “大理石製 新法地平日晷와 昭顯世子”, 1985, 「東方學志」第46, 47, 48 合輯,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3. 沈 括, 「夢溪筆談 卷之八 象數二」, 中華民國57年(1968), 王雲五主編,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公司.